

오수처리시설 관리방법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아래와 같이 관리기준 및 금지행위를 준수하여 벌칙 및 과태료 처분 등이 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기준 [하수도법 제7조 등]

1.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1일 처리용량	항 목	수질기준	비 고
50m ³ 미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mg/L)	20 이하	
	부유물질 (mg/L)	20 이하	
50m ³ 이상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mg/L)	10 이하	
	부유물질 (mg/L)	10 이하	
	총질소 (mg/L)	20 이하	
	총인 (mg/L)	2 이하	
	총대장균수 (개/mL)	3,000 이하	

※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않음

2.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여 3년간 보관

- ▶ 50m³/일 ~ 200m³/일 시설 미만 : 연 1회 이상
- ▶ 200m³/일 이상 시설 : 6개월 마다 1회 이상

3. 1일 처리용량 50m³/이상 시설 : 기술관리인 선임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 위탁관리

4. 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청소(필요시마다 실시하며, 슬러지 저류조 등 슬러지가 채워질 때마다 수시로 청소하는 것이 원칙)를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처리

5.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시설의 경우 전원을 끄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금지행위 [하수도법 제39조 등]

1.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 배출하거나 중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정화조 관리방법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아래와 같이 관리기준 및 금지행위를 준수하여 벌칙 및 과태료 처분 등이 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기준 [하수도법 제33조 등]

1. 매년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은 연2회 이상 실시)

▶ 청소방법

- 단독정화조 : 정화조 전체용량 수거처리 (단, 폭기식일 경우 : 부패조 및 저장조의 오니 전량수거 처리)

※업소(가정)의 휴업, 폐업, 공사, 건물 전체의 사용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연장 가능

▶ 청소신청

수거지역	분뇨수집·운반업체	연락처
도계, 하장, 신기지역	도계제일위생사	☎ 541-2354, 4448
원덕, 근덕, 미로, 노곡, 가곡지역	원덕환경공사	☎ 573-8983, 8984
남양, 성내, 정라, 교동지역	신성산업공사 동진환경	☎ 574-1515 ☎ 576-0308

2.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시설은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하여야 함

3. 정화조의 경우 수세식 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4.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정화조의 경우 전원을 끄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금지행위 [하수도법 제39조 등]

1.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 배출하거나 중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